

국제정산시스템의 변혁

- 대체통화수단(Alternative Calling Procedure)의 확산 -



이 윤 미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 표준연구단 선임연구원
TTA 요금정책 실무작업반(TSG3) 의장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2. OECD 국가들의 움직임 |
| II. 현 국제정산시스템의 원리와 문제점 | 3. 개도국의 입장 |
| III. 대체통화수단의 확산 | 4. 한국의 대응 |
| IV.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움직임 | V. 맺는말 |
| I. 미국의 움직임 |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

국제통화를 완료시키기 위하여는 2개국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발신국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징수요금(collection rate)이라 하고,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발신국 통신사업자가 상대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간에 합의한 1분 단위당 요금은 협정요금(accounting rate)이라 한다. 현재의 국제관행은 협정요금 수입을 국제통화 양

당사국간에 50 대 5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두 국가간에 합의된 협정요금이 \$1라 할 때, 발신국 통신사업자는 착신국 통신사업자에게 매 완료통화호마다 분당 \$0.5 를 지불하게 된다. 전통적인 국제통화에서는 발신국은 소비자로부터 통화요금을 징수(징수요금)하고 착신국은 발신국의 통신사업자로부터 미리 합의된 협정요금의 절반(이를 정산요금이라 함)을 받게 된다.

원래 협정요금은 양국의 징수요금이 비슷하다

는 전제하에 징수요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속도와 각국의 규제완화 정도와 경쟁상황이 다름에 따라 양국의 징수요금이 차이가 나고, 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마케팅 유인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통화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착신자 부담전화(800번 전화), 카드전화(Card Call), 고국직통전화(HCD; Home Country Direct) 등과 같은 역과금서비스는 관련 국가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없으나, 콜백서비스와 같이 국가간에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최근 ITU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공동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 콜백서비스에 대한 논쟁의 고조로 대체통화수단(Alternative Calling Procedure; ACP)과 콜백서비스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대체통화수단은 위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국제통화 완료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통화가 완료되는 모든 통화방식을 지칭한다. 즉, 협의로는 국가간의 허용여부가 다름으로써 문제가 되는 콜백서비스를 주로 의미하나 통화의 방향을 역전시켜 착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제전화, 고국직통전화와 같이 양국의 사업자간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역과금서비스도 광의로 보아서는 전통적인 국제전화 완료방식과는 다르므로 대체통화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류한 협의와 광의의 대체통화수단은 모두 양국의 국제관문국을 통과하여 상대국에 정산요금을 지불하는 기존의 국제정산 체계내에서 국제통화가 이루어지지만, 이외에 공전공점속의 허용으로 가능해 지는 국제단순재판매(ISR)나 기술발전으로 등장하게 된 인터넷폰과 같은 신규서비스는 기존의 국제정산시스템을 바ypass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는 대체통화수단이

라 할 수 있다. 국가간의 협정요금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리화일서비스(refile)도 관련국가의 합의된 통화 경로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국제통화가 완료되므로 대체통화수단의 범주에 들어간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백서비스나 리화일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II는 기존 국제정산시스템의 원리와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III은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체통화수단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존 국제정산시스템의 붕괴가속화 현상을 설명한다. 기존 질서의 붕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선진국들은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미 의견 수렴을 본 상태이며, 개도국들은 각 지역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ITU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모아 이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V에서는 새로운 정산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주장과 그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국통신이 ITU-T SG3 회의시 제시한 질충안을 소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제요금 개편 방향도 아울러 언급한다. V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글을 맺는다.

II. 현 국제정산시스템의 원리와 문제점

국제통화의 완료비용으로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협정요금의 결정 기준으로는 과거에는 발신자 취득원칙(sender keeps all),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외국국의 국제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단순가산방식 등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보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협정요금을 배분하는 수입균등 배분원칙(accounting revenue division principle)이 채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국가간에 합의된 협정요금이 \$1.0이라 할 때, 발신국 통신사업자는 착신국 통신사

업자에게 매 완료통화호마다 분당 \$0.5의 정산요율을 지불하게 된다.¹⁾ 그러나 발신통화마다 분당 \$0.5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중 양국간에 교환된 통화량을 서로 상쇄하고 상쇄되지 않은 통화량(overflow traffic)에 대해서만 발신통화초과국이 정산금(settlement payment)을 지불하게 된다.

협정요금의 수준은 통신주관청간의 상호협정에 의해 결정되며 역사적인 패턴이나 국제통화비용분석에 근거를 두지만 어느 경우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협정요금은 양국과 중계국간에 배분율이 정해져 있어 통화 경로에 관계없이 일정하였고, 징수요금과 협정요금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면서 징수요금과 협정요금을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움직임은 ITU 권고안 D. 150에 반영되어 있다. 내국의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징수요금의 결정은 내국문제(national sovereignty)로 상호불간섭 사항으로 인정되는 반면, 협정요금은 국제통화를 완료시키기 위해 제공된 시설의 이용대가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당사국 통신주관청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분적 사고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 완료에 소요되는 물적, 인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 ITU는 지역별로 비용차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요금회의(Regional Tariff Group)를 설립하여 각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는 요금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지역요금회의(TEUREM)에서 제정한 권고안 D. 300R은 역내 국제통화에 대해 국내연장선, 국제교환시설, 국제전송로에 대한 부분별 표준협정요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요

금회의(TAS)의 권고안 D. 500R은 역내에서 적용하는 거리별 최고협정요금을 설정하여 회원국들이 원가를 초과하는 협정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ITU의 권고안 D. 150이 제시하는 협정요금 결정방식에는 이용회선당 일정요금을 부과하는 정액보상방식(flat rate price procedure), 트래픽 단위당 미리 정한 요금을 받는 트래픽 단위당 보상방식(traffic unit price procedure), 당사국간 통화에 대해 협상에 의해 결정된 협정요금수입을 배분하는 수입배분방식(accounting revenue division procedure)이 있으며, 수입배분의 경우, 50대 50의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이 차이나는 경우에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배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액보상방식은 중계국의 직접중계 트래픽 처리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양단측의 협정요금 결정방식으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트래픽 단위당 보상방식은 유럽요금회의의 권고안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이 권고안이 제시하는 표준협정요금은 유럽대륙내의 교환중계 트래픽의 경우 중계국과 양단 국가간의 보상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입배분방식은 비용분석 결과 등 아무런 다른 기준이 없을 때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협정요금을 결정하고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유럽역내 통화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의 국제통화 정산이 이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배분방식에 의한 협정요금 결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비용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50대 50의 협정요금 배분은 양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동등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ITU의 D. 150 권고안이 만들어 질 당시에도 이미 50대 50 이외의 배분을

1) 현재 한국과 미국의 협정요금은 0.85 SDR (1 SDR=US \$1.44, 96.12 현재)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발신통화량에 대해 분당 0.425 SDR의 정산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96년 12월말부터는 0.77 SDR/0.385 SDR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적용되는 예가 있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50 대 50 이외의 배분율을 적용하자는 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문제는 50% 이상의 수입배분을 요구하는 측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 사업자간에 통화량이 균형을 이룬다면 정산은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협정요율 그 자체보다는 통화불균형(traffic imbalance)으로 인해 한쪽 통신사업자로부터 상대방 통신사업자에게 순지불을 하게 된다. 문제는 통화불균형이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발신통화량이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지불이라는 고착된 상태라는 데에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정산수지 적자는 주로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95년말 현재 미국의 정산수지 적자는 5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협정요율의 수준이 아니라 통화불균형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편 협정요율이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협정요율이 낮으면 결국 정산지불금이 낮아져서 논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통화불균형 현상을 협정요율 인하 협상시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산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진 가운데 선진국들은 원가에 기준한 정산체계를 주장하여 협정요율을 낮추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경쟁이 도입되기 전에 ITU가 제정한 수입배분방식의 국제정산체계를 바꾸기를 원하는 반면, 정산수입이 주요 외화수입이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정산수입이 통신인프라 구축의 재원임을 이유로 원가를 초과하는 협정요율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수입배분을 얻으려 한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징수요율은 경쟁도입으로 대폭적으로 하락한 데 반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협정요율은 그 하락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징수요율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

털 기술이 발전하여 서비스의 원가를 낮추고 있으나, 원가를 크게 초과하는 협정요율 체제하에서는 기술발전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정산시스템은 ITU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신통화량과 수신국간에 정산수입을 균등 배분하는 수입균등배분원칙외에도, ITU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관행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착신통화 비례배분제(proportionate return traffic regime)와 통일협정요율제(uniform accounting rate regime)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착신통화 비례배분 원칙은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발신통화량에 비례하여 각 사업자에게 착신통화를 할당하는 방식이며, 통일협정요율제는 자국내 다수의 경쟁사업자에게 동일한 협정요율을 적용하는 정산원칙이다.

착신통화 비례배분원칙은 1985년 미국에 경쟁이 도입되어 MCI와 Sprint가 국제전화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자 외국의 독점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수인 미국의 사업자들을 차별하여 불리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으로서, 발신통화 점유율에 비례하여 사업자간에 착신통화를 배분토록 한 것이었으며, 통일협정요율제도도 착신통화 비례배분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독점통신사업자가 경쟁이 도입된 국가의 다수통신사업자를 협정요율 협상에서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주도로 확립된 국제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더욱 진전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획일적으로 발신통화에 비례하여 착신통화를 통신사업자간에 배분하거나 동일한 협정요율을 강요하는 방식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하거나 공급조건을 제시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혁신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관문사업자(International Gateway Operator)인 기간사업자를 바이패스하여 국

내통신망에 연결시켜 국제통화를 완료시키면 통화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영국과 주요 OECD국가와의 국제통화 완료비용을 살펴보면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국제관문국을 바이패스하고 영국의 국내공중망에 접속하여 국제통화를 완료하는 비용에 비해 기존의 국제정산협정에 따라 정산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두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참조) 따라서 관문국을 바이패스하는 국제통화방식의 비용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착신통화비례배분 받지 못하여 정산수입을 얻지 못하는 결합비용(joint cost)을 고려하면,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통화 완료 방식을 고수하고 합리적인 통화경로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미 통신서비스 산업에 자유화와 경쟁도입이 상당히 진행된 선진국들은 경쟁이 도입되기 전에 ITU가 도입한 수입배분방식의 국제정산체계 뿐만 아니라, 착신통화비례배분제와 통일협정요금제도로 바뀌지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 FCC는 협정요금을 국내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료에 기준하여 협상하도록 하고 미국 통신사업자가 협정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이패스 경로의 이용을 허용하고 협정요금 인하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산금 지불을 연체하도록 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OECD 가입

국들도 1998년 1월을 기준으로 현행 정산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산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여 기존의 국제정산시스템에는 대변혁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IV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III. 대체통화수단의 확산

콜백서비스와 같은 대체통화수단은 징수요금이 각국의 주권사항으로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같은 국제통화라 하더라도 발신지에 따라 징수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통화의 방향을 역전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기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는 요금차익이라는 마케팅 면에서의 유인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진보가 결합하여 등장한 통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국가간의 징수요금 격차가 지속되는 한 콜백서비스와 유사한 대체통화수단의 추가 개발 유인이 있게 된다.

국제통화의 양국이 모두 콜백서비스를 허용하거나 금지한다면 콜백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의 여지는 없다.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콜백서비스 제공여부와 제공조건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통화의 일방은 콜백서비스를 허용하는 반면, 그 상대국은 콜백서비스를 금지하는 경우이다. (<표 1>) 콜백서비스는 넓은 시각에

<표 1> 콜백서비스 금지 57개국 (자료 : ITU-T 사무국, 1996. 11 현재)

OECD 국가	비 OECD 국가
한국,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알제리,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사우디 아라비아, 바하마, 바레인, 벨루루시, 부룬디, 버키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국, 시프러스, 콜롬비아, 지부티, 에쿠아도르, 이집트, 아랍연합, 에르트리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서 사모아,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서 볼 때 전기통신 기술진보와 사업환경 변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대체통화수단이지만, 국가의 통신주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측면과 개도국 정부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수입감소 효과 및 정상적인 공중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시되어 최근 국가간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ITU는 96년 10월의 ITU-T 총회(World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Conference '96)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정된 두 가지 방식의 콜백서비스(constant calling과 answer suppression) 제공을 금지한 바 있으나, 불법적인 대체통화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콜백서비스는 이를 합법화하는 일부 국가(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두고 각국에 영업대리점을 설치하고 가입자를 모집하여 요금이 싼 국가의 다이알톤으로 통화를 완료시키고 요금은 미리 계약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콜백서비스는 요금차익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서비스이므로 원가를 초과하는 높은 징수

요금이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콜백사업자들이 콜백허용국 기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정산요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싼 요율의 대량이용할인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콜백허용국 기간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덤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너무 싼 징수요금도 문제가 된다.

한편 콜백사업자에게 정산요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싼 요율로 통화트래픽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발신호에서의 적자를 착신통화비례배분제에 따라 추가로 할당된 착신통화를 통한 정산수입으로 보전함으로써 현존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생겨난 서비스가 현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탱되고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확산을 초래함으로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콜백서비스를 완강히 거부하는 개도국의 경우, 불법적인 콜백서비스로 인하여 통신사업자의 발신수입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착신통화로부터의 수입인 협정요금을 인하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반면 이렇게 완강하게 지키는 높은 협정요금 덕분에 콜백트래픽 제공사업자의 원가

〈표 2〉 각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통화의 분당 콜백요금 (단위: US \$) : 1996. 6. 현재

	콜백요금(A)	정산요금(B)	(A-B)	(A-B)/B (%)
브라질	0.69	0.56	0.13	23%
과테말라	0.87	0.54	0.33	61%
인디아	0.97	0.90	0.07	8%
이스라엘	0.85	0.55	0.30	55%
일본	0.39	0.46	-0.07	-15%
나이제리아	0.75	0.75	-	0%
남아공화국	0.64	0.60	0.04	7%
스페인	0.49	0.51	-0.02	-4%
스위스	0.37	0.26	0.11	42%
타일랜드	0.78	0.75	0.13	4%
평균	0.68	0.59	0.09	18%
중앙값	0.72	0.56	0.06	7%

자료: New World Telecommunications, FCC, ITU (1996), Direction of Traffic에서 재인용

에 미치지 못하는 발신타래픽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저렴한 콜백서비스로 개도국 사업자의 국제통화수입은 더욱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높게 유지하는 협정요금 덕분에 콜백서비스 효율의 추가 인화와 콜백통화량 증가를 막는 면도 있으므로 콜백서비스와 높은 협정요금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표 2>는 콜백서비스 효율이 협정요금의 1/2인 정산요금보다 평균 약 18 퍼센트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콜백서비스가 국가간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94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ITU전권회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ITU-T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권고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도록 하고, 회원국들은 상대국의 국내법과 규제제도를 존중하여 콜백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ITU-T는 94년 12월 ITU-T SG3(요금 및 정산원칙) 연구위원회 회의에서 콜백서비스 문제를 다루는 임시전담연구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SG1(서비스 정의), SG2(통신망 운용) 등과 협력하여 콜백서비스를 둘러싼 규제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임시전담연구반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조정하여 96년 6월 ITU 제 51차 이사회에 콜백서비스관련 결의안 초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는 권고초안의 채택을 보류하고 대신 ITU-T가 조기에 콜백서비스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임시전담연구반 회의시 콜백서비스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하기보다는 권고안을 만들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견해와 이사회가 결의안으로 채택하도록 하자는 개도국 중심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개도국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사회에 결의안 형식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회에 상정되자 다시 미국중심의 주장대로 결정난 것을 보면, 콜백서비스에 대하여 미

국을 위시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의견대립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ITU의 권고안(Recommendation)은 결의안(Resolution)보다 효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백문제는 콜백서비스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것이 불법적인 국제통화수단이라는 빙산의 일각이며, 이에 대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받는 개도국과 기술발전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선점하려는 선진국간의 대립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시전담연구반이 작성한 결의안의 요지는 각국의 통신주권을 재확인하여 각국은 콜백서비스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하고, 콜백문제를 다룸에 있어 타국의 국내법을 존중하며, 통신망의 품질을 심각히 저해하는 bombardment (constant calling이나 polling방식이라고도 함)방법과 answer suppression 방법은 금지하도록 한 것이었다

콜백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원가와 괴리된 통신요금체계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콜백서비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정부나 독점 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국제통신요금은 그 수익이 국내통신 하부구조 구축에 활용되는 상호보조의 요금으로 합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콜백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콜백서비스관련 논의는 결국 자국내 전기통신을 규제하는 권한은 각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바탕한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콜백서비스를 범으로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지 노력에 대해 자국법의 범위내에서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일부 선진국가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게 됨으로써 상호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은 96

년 10월에 열린 ITU-T총회(World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Conference '96: WTSC-96)에 6월 이사회에 상정되었던 결의안 초안을 약간의 문구수정만 한 채로 재상정하여 통과시키는 집요함을 보였다. 물론 순탄하게 의견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당초 이사회보고 원안에 가까운 형태의 결의안이 최종 합의함으로써 회의 참가국들의 전반적인 지지하에 콜백서비스관련 결의안이 ITU-T 총회에서 정식 채택되게 되었다.²⁾

ITU-T 총회의 결의안 채택은 내용에 자국법의 제한내라는 단서가 포함됨으로 해서 비록 기본적인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콜백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룸에 있어 ITU 회원국들이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앞으로 콜백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권고가 ITU-T에서 다음 회기중에 추가로 연구되고, 또한 콜백서비스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통신기구로서 ITU가 조정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움직임

대체통화수단과 국제정산체제 개편의 문제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체통화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선진국들과 이의 활용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개도국간에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즉,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은 대체통화수단을 기술발전이 따른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인식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산 질서를 개편하기를 원하는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콜백서비스 등을 세금을 피하는 밀수(smuggling)로 보거나, 일종의 덤핑으로 보아 기존 질서내에서 이를 시정하려고 한다. 이하 미국, OECD, 개도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한국의 위치를 짚어 본다.

1. 미국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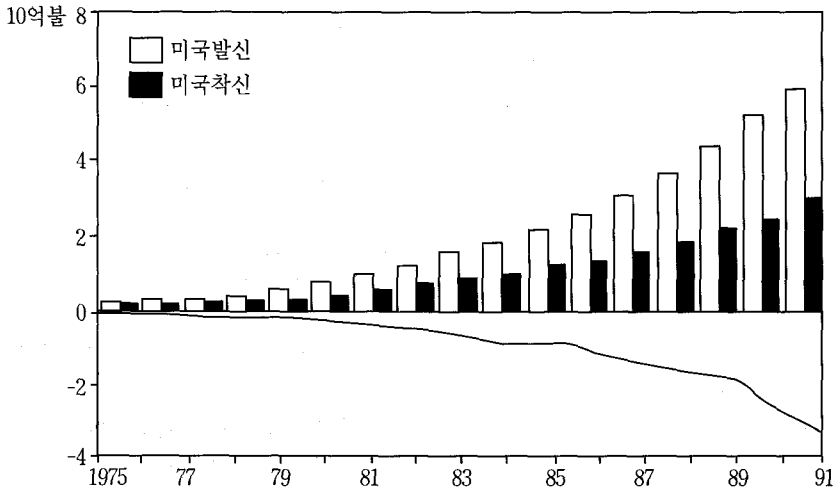
사실상 정산수지 적자 문제는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은 발신호와 착신호에 대해 같은 정산요금이 적용되는 수입균등배분제의 국제정산방식하에서, 미국이 70년대 이래 가속화된 통화불균형으로 1988년에는 약 20억 달러(약 2조 6천억)의 정산적자를, 작년(1995)에는 약 55억 달러(약 4조 5천억)에 이르는 정산적자를 기록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³⁾ 미국발신통화량은 현재 전세계 발신 국제통화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FCC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신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FCC가 유연하게 국제정산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정산체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침(FCC policy statement, 1996. 1. 31)을 발표하였으나, 실상은 누적되는 정산수지 적자로 현존의 정산시스템을 그대로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2) 자세한 논쟁 경과에 대해서는 이홍립, 이윤미(1996) 참조

3) 특히 1989년에는 멕시코, 서독, 필리핀, 한국,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한 국제정산수지 적자가 전체 정산수지 적자의 약 55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자마이카, 멕시코, 홍콩,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을 대표적인 정산적자 대상국으로 드러나고 있다. (Stanley (1991)와 1996년 11월 26일자 Reuters NewsMedia "FCC Rule Targets Overseas Phone Costs")

〈그림 1〉 미국의 발착신 국제통화량과 정산수지 현황 : 1975-1995



자료 : Telecommunications Traffic Balance, Frieden (1996)에서 재인용

FCC가 96년 1월말에 발표한 신정책을 요약하면, 기존 정산시스템의 전제가 되고 있는 쌍방사업자의 협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미래의 통신서비스 제공방법으로는 최선이 아님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신서비스 규제정책을 의회에 제안한 것인데, 협정요금을 국내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료에 기준하여 협상하거나, 협정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이패스 경로를 이용하거나, 협정요금 인하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사업자로 하여금 정산료 지불을 연체하도록 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FCC는 미국사업자들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한, 혁신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설비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FCC는 디지털 기술과 라우팅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국제통화방식과 다른 통화방식이 미국내 시장이나 외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고 보며, 이러한 서비스로는 국제단순재판매(ISR), 고국직통전화, 콜백서비스, 통신트래픽허브화등을 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징수요금이나 협정요금의 차이(price arbitrage)를 이용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효된 외국통신사업자 진입법령(Foreign Carrier Entry Order)은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들어와서 통신서비스나 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세계각국에 경쟁을 파급시켜 혁신을 유발하고 경쟁력 있는 요금설정으로 요금인하를 가져와 외국발신 트래픽을 늘리고 미국과의 통화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미국정부는 각국의 경쟁진전 상황이 다름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장구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산정책을 다원화시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즉 a)외국독점시장에 대해서는 협정요금을 인하하려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강경조치

를 취하고 b)경쟁시장에서는 협정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접속료등 다른 방법으로 통화를 완료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c)현행 정산체제를 개혁하고 경쟁을 도입하려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FCC는 96년 12월내로 외국에 지불하는 정산료의 상한을 보다 원가에 근접하도록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크 요율(benchmark rate)로 발표하여 각국에 대한 협정요금 인하 압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특히 개도국으로부터 통신주권 침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OECD 국가들의 움직임

OECD는 국제통신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콜백 서비스를 위시한 신규서비스들이 국가간의 요금

차를 이용하려는 단기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에 따라 등장한 서비스로 파악하고 기존의 국제통신 제공방식을 재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투명성, 비차별성,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원칙으로 국제통화완료비용(international traffic terminating fee, 접속료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정산시스템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국제통화완료비용은 국제관문교환기에서 국제통화를 처리하고 국내통신망에서 통화를 완료시키는 비용을 포함한다. <표 3>에 의하면 영국과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계산한 국제통화 국내완료비용은 현행 평균 정산요율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의 정산시스템의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정수요금과 협정요금을 인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OECD 국가간에는 국제단순재판매 허용,

<표 3> 국제통화 국내완료비용과 정산요율의 비교 (영국과의 전용회선을 이용할 경우)

	분당 전용회선 요율	각국의 시내요금	국제통화 국내완료비용	영국과의 1/2정산요율	비율
	A	B	A+B=C	D	D/C
오스트레일리아 (Telstra)	0.12	0.00	0.12	0.20	165%
덴마크 (Tele Denmark)	0.03	0.04	0.07	0.19	256%
핀란드 (Telecom Fin.)	0.04	0.01	0.05	0.19	397%
프랑스	0.07	0.04	0.11	0.13	119%
일본(KDD)	0.24	0.03	0.27	0.51	187%
스웨덴(Telia)	0.04	0.02	0.06	0.12	197%
미국(AT&T)	0.07	0.04	0.11	0.13	116%
OECD평균	0.08	0.03	0.11	0.18	191%

자료: OECD (1996)

1. 분당 전용회선 요금은 56/64 kbit 국제전용회선료의 1/2을 44,640분으로 나눈 값임.
2. 전용회선 요금은 1994년 9월 현재 가장 싼 요금을 적용.
영국과의 협정요금은 1995년 12월 기준, 환율은 1994년 평균 환율을 이용.

국제통화수단의 장려, 국제통화 국내완료비용 적용 등의 정책을 채택하여 원가주의 요금설정이 OECD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통화 국내완료비용 방식을 기존의 국제정산방식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다른 점은 기존의 방식이 쌍무적인 협정에 의해 협정요금을 결정하여 한 국가내에서 국제통화를 완료시키는 비용이 국가마다 달랐던 데에 비해, OECD가 권고하는 국제통화완료비용은 발신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통신사업자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동일한 국제통화완료비용을 부과하는 데에 있다.

이 권고안은 명백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거부되지도 않았다. ITU-T의 유럽지역요금회의인 TEUREM에서도 일찍부터 협정요금 대신 국내접속료의 개념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WTO의 다자간 기본통신협상(Negotiations on Basic Telecommunication Service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OECD의 제안을 근거로 하는 국제통화완료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미 스웨덴의 Telia는 스웨덴-영국 구간에 국제정산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접속료를 적용하겠다고 BT에 제안한 바 있다.

스웨덴의 국내접속료는 국제협정요금의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의 국제통화접속체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Telia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협정요금을 80%까지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Telnor나 핀란드 사업자들은 이미 동의하였고 Tele Denmark나 France Telecom과는 협상을 진행중이나 BT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있다.⁴⁾

일단 1998년에 EU내에서 음성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국제협정요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국내접속료가 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업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통화량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므로 국제통화 흐름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 개도국의 입장

소비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통신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 개도국들이 당면한 문제는 외화의 부족, 국제사회에서의 낮은 신용도로 인한 높은 자본조달 비용, 인구과소지역의 개발부진, 숙련된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통신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에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를 상호보조한다는 명목으로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국제통화 징수요금 수입과 국제통화의 정산수지 흑자를 통하여 유입되는 외화수입은 개도국에게 유용한 통신 인프라 구축의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

1984년 ITU Independent Commission의 "Missing Link" 보고서에 의하면 ITU 회원국들이 개도국과 선진국간 국제통화의 협정요금 수입중 일부를 개도국을 위한 통신인프라구축 재원으로 할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989년 니스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도 이 정신을 이어 받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협정요금수입을 50 대 50 이외의 배분율로 개도국에게 더 많이 할당하고, 개도국은 추가로 얻은 수입을 통신시설의 확충에 이용하거나 전기통신개발센터(Center for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요금 수준 및 그 배분비율은 통신주관청간에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여 협상력에서 열세에 있는 개

4) Communication Week 1996. 3. - 1996. 6. 각호 참조.

도국들이 ITU 결의안의 도움으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애초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또한 개도국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용분석에 의하여 개도국의 통신비용이 더 높다고 판명된 경우에 50 대 50 이의의 배분을 적용을 허용하는 ITU 권고안 D. 150의 범위내에서 당사국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관철되어 ITU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통신원가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 연구결과를 보면⁵⁾, 위성이나 해저케이블을 통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통화완료 비용의 경우, 개도국 평균(19개국) 비용은 0.7610 SDR인데 반해, 선진국 평균(8개국) 비용은 0.3664 SDR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도국의 평균비용이 선진국보다 약 2.08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개도국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⁶⁾의 비용은 선진국 평균보다 2.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국가별로 볼 때, 가장 비용이 높은 국가는 가장 비용이 낮은 국가의 4.1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도국 중에서도 소득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의 평균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100인당 전화보급율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간 국제전화 통화분수가 5내지 7 백만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단위당 통화비용은 전화보급율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낮아져서 100인당 전화보급율이 25대를 넘어서고 국제전화 처리분수가 천만 내지 수 억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비용차이가 별로 없다.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과의 국제통화는 전체 국제통화중 약 2 내지 10 퍼센트를 차지하였으

나, 개도국의 국제통화중 선진국과의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지 95 퍼센트에 달한다. 따라서 개도국에게 유리한 수입배분율을 적용하더라도 선진국의 전체 국제통화수입에 비교해 볼 때 선진국의 추가부담비중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트래픽의 방향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비용자료를 제시한 선진국 모두 개도국과의 트래픽에 있어 발신통화분수가 전체 착발신타래픽의 52 내지 71 퍼센트를 차지하여 착신통화분수를 초과하고 있다. 개도국의 측에서 볼 때는 분석자료를 제시한 개도국의 약 절반은 선진국과의 트래픽에 있어서 착신 초과(52내지 79 퍼센트) 현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개도국들의 착신비율은 33 내지 45 퍼센트를 차지한다. 개도국을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과의 트래픽은 착신초과판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비용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 국제정산체제내에서 개도국에게 유리한 수입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가기준의 정신에 부합하고, 상호트래픽 규모로 보았을 때 선진국에 추가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ITU (1996) 자료에 의하면 개도국의 비용이 반드시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아니며, 규모의 경제로 비용절감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통화량의 많고 적음은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인구의 규모, 이민자 비율, 거래대상국과의 거리에도 달려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비용기준 논리에 대응하여 불리한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통화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재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대응

국제정산체제 개편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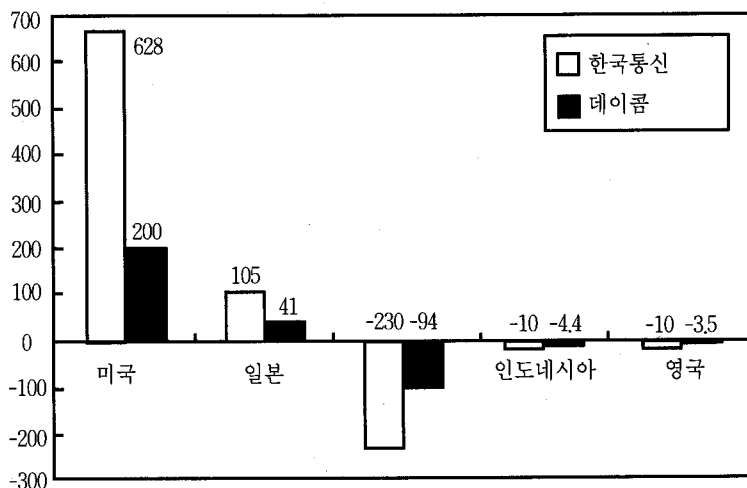
5) ITU (1990), p. 17

6) ITU, Missing Link 보고서에서 분류하는 "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국가들

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산수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산수지는 94년에 644억원, 95년에 4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아직까지는 정산수지 흑자국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흑자폭은 매년 격감하고 있고, 96년에는 한국통신의 경우 278억원의 흑자가 예상될 뿐이다. 더구나 국가별 정산수지를 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흑자를 제외하면 균형 또는 적자로 조만간

우리나라도 정산수지 적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95년도 대미정산수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합하여 약820억원의 흑자이지만,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교환량이 2위인 중국에 대해서는 36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96년도에 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95년 약간의 정산흑자를 보았으나 96년에는 거의 균형에 이를 것

<그림 2> 한국의 국제정산수지 현황 : 95년도



자료: 한국통신, 데이콤. 이 석희(1996)에서 재인용

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지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⁷⁾

이러한 정산수지 현황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국제통화요금에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협정요금은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분당 일

정한 요율로 되어 있으나 최적 협정요금 이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좀 더 효율적인 요금 설정을 위해서는 통화트래픽의 다과에 따라 시간대별로 협정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⁸⁾

또한 정수요금도 더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선택통화요금제를 개발하여 소비자

7) 이석희(1996, 12) 참조

8) 현재 시간대별로 차등화된 협정요금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 버뮤다,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Stanley (1991))

후생의 증대⁹⁾와 동시에 요금 할인에 따른 통화량 유발을 통하여 사업자의 수입도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듯이 개도국의 범주를 넘어 선진국의 반열에 들고 있다. 정산수지 패턴으로 보아서도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서는 실익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배양하면서 양 진영에 모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통신은 96년 11월의 ITU-T SG3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정산시스템 개선방향을 제안한 바 있는데,¹⁰⁾ 이는 대체통화수단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원가에 근거하는 협정요금과 징수요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 비용차에 근거하여 개도국에 높은 비용을 반영하는 수입배분율을 허용함으로써 개도국을 선진국의 협정요금 인하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인하되, 초과비용에 대한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고비용국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IV. 맺는말

세계적으로 경쟁이 도입되더라도 미국의 정산수지는 적자이겠지만, FCC는 현 정산지불금의 상당부분이 원가를 훨씬 초과하는 협정요금과 외국의 독점가격이 빚어낸 결과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정산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산지불국들-대부분 선진국들-은 현재의 정산시스템을 자유시장 원칙에 근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게임의 룰(rule of game)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반면, 정산수지 흑자국인 개도

국들은 세계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정산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들은 통신인프라 구축의 재원을 이 정산흑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수입원이 감축될 경우 통신시장의 성장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당히 차별적인 국제정산시스템이 완전 비차별적인 경쟁으로 대체되면 국제전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회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는 격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콜백사업이나 국제회선재 판매사업 등을 불법으로 규명하고¹¹⁾ 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콜백서비스가 근본적으로 국가간의 요금차를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기술진보의 결과라고 볼 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규서비스의 출현을 기존의 사업자들만을 전제로 하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WTO 기본통신협상 양허안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도 98년부터는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콜백사업이나 회선재판매사업을 허용할 방침으로 있어 한국통신을 비롯한 국제통신사업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하고 경제적 기회비용을 증가하는 과도한 초과이윤을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다양한 선택통화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통화패턴에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협정요금은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하도록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콜백서비스가 기존의 정산시스템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인터넷전화나 국제회선 단순재판매는 기존의 정산절차를 바이패스하는 통신서

9) 선택통화요금제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이 윤미 (1996) 참조

10) 이 석희 (1996, 11) 참조

11) 이 윤미, 이 석희 (1996) 참조

비프로세서, 비용구조는 기존의 국제통화와 달리 통화시간대나 통화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고 통신사업자간의 정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통신망의 디지털화로 기존의 통화방법도 거리에 의존하는 요소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어서 기존 정산시스템의 대체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실상 통신사업자가 기존정산체제에 안주하여 징수요금과 협정요금을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공방법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계획한다면 통신사업자는 징수요금과 협정요금을 낮게 유지하여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콜백사업자와 같은 경쟁사업자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새로운 통화기법의 개발을 지연시키겠지만, 단기적인 이득을 위하여 현 체제에 안주하면 오히려 이의 붕괴를 더욱 재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2,000년대에 범세계적인 이동위성통신시스템이 완결되면 기존의 국가간 징수요금이나 협정요금은 완전히 바이패스하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정산시스템 자체가 무의미해지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면 국제통신 기술진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요금을 설정하고 협정요금을 낮게 유지하려는 국가 그룹과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징수요금과 협정요금을 유지하려는 국가그룹의 이분화 현상이 예견된다.

국제통신시장에 경쟁이 확산됨에 따라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 예견되고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고 순조롭게 요금을 재조정(rate rebalance)하는 기회는 더욱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OECD 가입국들은 1998년부터 현행 국제정산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정산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여 경쟁시장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비OECD 국가들간의 괴리는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시작되는 ITU-T SG3의 제 12차 연구회기에서 신국제정산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연구과제화하여 장차 선진국들의 주장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인정시키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격차에 따른 경제적, 정책적인 문제점들은 TAS, TEUREM 등의 지역요금그룹회의를 중심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연구과제가 제안되어 경제적인 남북문제가 통신산업에도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OECD 가입안이 이미 국회의 비준을 얻었는 바, 1998년 1월을 기준으로 현행 정산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정산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OECD의 결정은 신규 국제통신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및 쌍무적인 국제정산협상, ITU-T SG3, TAS등에서의 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석희 (1996. 12), “국제통화정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 통신시장, 96. 12, 한국통신 통신경제연구소
- 이석희 (1996. 11), “True cost oriented accounting shares”, 1996년 11월 ITU-T SG3 총회 발표
- 이윤미 (1996), “선택통화요금제도 수요모델”, 연세경제연구, 제 3권 2호, 연세대학교
- 이윤미 (1996. 9), “국제협정요금 정산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1996년 9월호 국제표준화 기술동향분석, 한국통신
- 이윤미, 이석희(1996), “Regulation on Call-back service in Korea”, 1996년 3월 ITU-T

SG3 총회 발표

- 이홍립, 이윤미 (1996), "ITU-T총회(WTSC'96) call-back 관련 결의안 채택", 1996년 11월호 경영과 기술, 한국통신
- Dansby, R. E. and T.R.Luciano (1994), "Financial Agreements for Jointly Provided International Services", Ch 4 in Asymmetric Deregulation: The Dynamics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d by E. M. Noam and G. Pogorel, Alex Publishing Company
- FCC (1996), "Policy statement on International Accounting Rate Reform", Jan 31 1996
- Frieden, R. (1996),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Toll Revenue Division Process", Ch 9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Handbook, ed. by R. Frieden, Artech House, Inc.
- ITU (1996), "The cost of international telephone calls", pp4-14, Direction of Traffic, 2nd ed.
- ITU (1990), Study of the Costs of Providing and Operating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between Industrialised and Developing Countries
- ITU (1984), "The Missing Link" Report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for World Wide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December 1984
- OECD (1996), "New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the Accounting Rate System", DSTI/ICCP. TISP/AH(95)2, 1-2 February 1996, OECD, Paris
- Stanley, K. B. (1991), "Balance of Payments, Deficits, and Subsidie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Services: A New Challenge to Regulation", Administrative Law Review, Summer

